

[첨부]

통일부 국정감사 질의 요청사항[외통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입국-

1. 민변에서 인신보호법에 따라 북한식당 종업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절차가 법원에서 개시된 이후 종업원 가족들로부터의 적법한 위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한데 대하여 2016. 6.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3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 또는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변 변호사들의 북한 종업원 가족과의 접촉이 위와 같은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나. 통일부는 9. 20. 대북 수해지원을 목적으로 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

민협)의 북한 주민 접촉신청도 수리 거부했는데, 그와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 통일부의 법해석 및 처분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2. 북한종업원의 입국 당시 통상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하여 탈북자 관련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해외식당에서 일하는 2,30대 여성 종업원 12명과 남성 매니저 1명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가. 종업원이 입국한지 불과 하루만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위 공표 당시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사진까지 함께 공개하여 언론에 배포된 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 발표시점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닷새 남겨둔 시점이었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3. 자의에 의한 입국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혹이 일자 통일부는 13명 모두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 이러한 입장 표명은 통일부에서 직접 북한 종업원을 면담하여 확인한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나. 민변의 접견 요청에 대해서 통일부는 외부인 접견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외부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수용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허용되는 접견을 수용기관 직원으로 한정할 경우 수용기관에 의해 발생한 적이 있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인권침해 방지수단은 강구되어 있는지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이산가족"이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전화·통신·방문·재회·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통일부가 위 법률에 따라 현재 수립·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 13명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은 위 법률상의 이산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통일부가 현재 수립·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 중 위 종업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접촉을 원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 위 법률 제2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재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의 재결합을 위한 방북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